

1999. 5. 11

제 85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화순)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국·공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수탁시설장 및 보육교사 정년 규정이 없어 시설장의 노령화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명칭 및 위치 (조례2조) — 3개소 (추가 등재)

- 어린이집 명칭은 중앙, 화정, 양3동, 서구, 유덕어린이집으로 한다.

나. 수탁시설장의 자격 (조례5조) — 정년 명시

- 수탁시설장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 기타 종사자 임명 (조례6조) — 보육교사 정년 명시

- 보육교사 정년은 55세로 한다.

라. 수탁시설장의 의무 (안 제8조) — 신설

- 수탁시설장은 보조금 및 수납된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 수탁시설장은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조례 제5조 제2항 및 기타 사유로 수탁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비용, 발생분은 당해 수탁시설장이 책임을 진다.

마. 위탁협약기간 (안 제9조) — 신설

-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 위탁기간 중 제10조 제2항에 의거 지도감독 결과 성실한 수탁시설장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수탁시설장은 재위탁 시 제외한다.

3. 참 고 사 항

- 지방자치법 제135조 2항

4. 검 토 의 건

- 본 조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수탁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 규정이 없어 시설장의 노령화에 따른 운영소홀과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로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종사자들의 정년을 규정함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 보호와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 및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모든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9] 에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및 언어적 발달 등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구청장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수탁시설장의 노령화로 아동들의 보호 육성 및 시설 운영이 미흡하던 중 조례개정안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에 수탁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정년 신설 조항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과 시설운영에 획기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에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 규정에 의하면 보호자들이 보호를 할 수 없는 시간을 대신하여 부모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이 되어야만 보호자들이 마음 놓고 아동들을 보육시설로 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시설의 장이 연령이 너무 낮고 미혼일 경우 자녀 양육의 경험이 없어 아동들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 낭비와 잘 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안정된 심신의 보호관리에 차질이 올 수 있으며, 너무 높은 연령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양육방식 답습으로 날로 변해가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실성 있는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탁 시설장의 연령 상한선**을 두어 아동들이 건전한 보호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토의견임.

○ 그리고 조례개정안 제7조 및 제8조 제10조의 신설조항은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수탁시설장으로서 책임 있는 시설운영과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동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적합한 조항이라 하겠으며,

○ 조례개정안 제9조 제1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 진정한 아동을 위한 보호육성과 시설 운영을 위해서 검토한 결과, 단기간 위탁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같은 시설에서 60 ~ 70%가 2 ~ 3년간 취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의 장이 변경될 경우 갑자기 바뀐 주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동들의 정서적 불안과 보호자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단절로 아동들의 퇴원율 증가,

둘째, 수탁시설장의 무책임한 시설운영과 종사자들의 관리 지도 소홀로 원만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의 보호 육성 및 시설 운영에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수탁시설장이 사명감을 갖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성실한 수탁시설장에 한하여는 재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들의 임면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현행 조례 제6조 **“기타종사자 임명”**을 **“보육교사 자격 및 정년”**으로의 개정은 종사자의 범위를 보육교사로 한정하였을 뿐 아니라 상위법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안 제6조 **“보육교사 자격 및 정년”**을 **“기타종사자 임명”**으로 현행 조례 규정대로 하되 **“기타종사자 임면 등”**으로 수정하고,

조례개정안 제6조 내용중 **“임명”**을 **“임면”**으로 하고, **“기타종사자”**를 **“보육교사”**로의 부분 개정과 임명일로부터의 부분 삽입은 잘 못된 내용으로 삭제하여 현행 조례 규정대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미래의 등불인 아동을 위한 보육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